##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50

발의연월일: 2020. 8. 10.

발 의 자: 김희국·강기윤·김석기

하영제・金炳旭・윤재옥

김승수 · 권명호 · 정희용

김예지 • 구자근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고, 건설기술용역을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용역"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 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 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법률 제 호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같은 조 제6호·제8호 및 제9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제16조제2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 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 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장 제1절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3항 본문·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기술인지니어링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 호 본문 및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 연기 입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바목·같은 항 제7호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바목·같은 항 제7호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입기술 연지니어링 "으로, "해당 건설기술용역"을 "해당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해당 건설기술용역"을 "해당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 엔지니어링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비"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비" 를 "건설엔지니어링용역비"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한다.

제39조의2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74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4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0조의2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0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제47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우수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으로,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우수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 "우수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 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 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기니어링"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2조제1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제6장의 제목 및 같은 장 제1절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로 한다.

제71조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7조의2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같은 조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9조제3호가목 및 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4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엔지니어 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엔지니어 링"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회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회에 따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엔지 니어링사업자
-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 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u>건설기술용역</u> "이란 다른 사 | 3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              |                  |
|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
| 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                  |
|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                  |
| 업무는 제외한다.                   |                  |
| 4.•5. (생략)                  | 4.•5. (현행과 같음)   |
|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 6                |
| <u>건설기술용역</u> 을 발주(發注)하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            |                  |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
| 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
| 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              |                  |
|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           | 8                |
| 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                  |
|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              | 건설기술             |

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u>건설기술용역</u>사업자"란 <u>건</u> 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 11. (생략)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7 (생 략)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5. (생략)
- 6. <u>건설기술용역</u> 산업구조의 고 도화
- 7. <u>건설기술용역</u>의 해외진출 및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
- 8.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의 지원 에 관한 사항
- 9. ~ 11. (생략)
- ③ ~ ⑥ (생 략)

제8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7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 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

| <u>엔지니어링</u>                     |
|----------------------------------|
|                                  |
|                                  |
|                                  |
| 9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
|                                  |
| ,                                |
| 10.・11. (현행과 같음)                 |
|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
| (현행과 같음)                         |
| 2                                |
|                                  |
| 1. ~ 5. (현행과 됱름)<br>6.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0. <u>선 현기 현 행</u> 의 역 영         |
| 7.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 <u> </u>                       |
|                                  |
| 8.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9. ~ 11. (현행과 같음)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8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
| 권고)                              |
|                                  |
|                                  |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 설연구소의 설치·운영이나 공 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과 기 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 지리) ① (생 략)
  -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결정한다.
  - ③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
| 3.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 |
| 리) ① (현행과 같음)      |
| ② <u>건</u>         |
| 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
|                    |
|                    |
|                    |
|                    |
|                    |
|                    |
|                    |
| <u>.</u>           |
| ③ (현행과 같음)         |
|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 ①                  |
|                    |
|                    |
|                    |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4. 제26조에 따른 <u>건설기술용역</u>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5. 제30조에 따른 <u>건설기술용역</u>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 6. 제50조에 따른 <u>건설기술용역</u>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 7. 8. (생략)
- ②・③ (생 략)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 ·             |
|-------------|---------------|
|             | 현행과 같음)       |
| 4           | <u>건설기술엔지</u> |
| <u>니어링업</u> |               |
|             |               |
| 5           | <u>건설기술엔지</u> |
| <u>니어링</u>  |               |
|             |               |
| 6           | 건설기술엔지        |
| <u>니어링</u>  |               |
|             |               |
| 7.・8. (현    | 행과 같음)        |
| ②·③ (현      | [행과 같음)       |
|             | 기술인의 신고) ①    |
|             | 건설기술엔지니어      |
|             |               |
| <u>o</u>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u>건</u>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생 략)

-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 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u>건</u> <u>설기술용역</u> 업무를 수행하게

| ② ~ ⑤ (현행과 집              | 같음)        |            |
|---------------------------|------------|------------|
| 제23조(건설기술인의               | 명의         | 대여         |
| 금지 등) ①                   |            |            |
|                           |            |            |
|                           | <u>건</u> 실 | 설기술        |
| <u>엔지니어링</u>              |            |            |
|                           |            |            |
|                           | •          |            |
| ②                         |            |            |
|                           |            |            |
| 설기술엔지니어링                  |            |            |
|                           |            |            |
| ① (뒫레기 기 O)               |            |            |
| ③ (현행과 같음)<br>제24조(건설기술인의 | 어드         | -정지        |
| 등) ①                      |            |            |
| 6 / <b>①</b>              |            |            |
|                           |            |            |
|                           |            | 강          |
| 설기술엔지니어링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
| 2                         |            |            |
|                           |            |            |
|                           | <u>7</u>   | <u>번설기</u> |
| 술엔지니어링                    |            |            |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 려 준 경우

- 3. ~ 7. (생략)
- ② ~ ⑤ (생 략)제4장 <u>건설기술용역</u> 등제1절 <u>건설기술용역업</u>

제25조(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용역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기술 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건설기술</u> 용역업의 육성을 위하여 <u>건설</u> <u>기술용역사업자</u>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5. 그 밖에 <u>건설기술용역업</u>의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위

| 3. ~ 7. (현행과 같음)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4장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등    |
| 제1절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
| 제25조(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u> 의 |
| 육성) ① <u>건</u>            |
| 설기술엔지니어링                  |
| 건설기술엔지니                   |
| 어링                        |
|                           |
|                           |
|                           |
|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
|                           |
| ② <u>건설기술</u>             |
| <u>엔지니어링업</u>             |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u>     |
|                           |
| <u>.</u>                  |
| 1. ~ 4. (현행과 같음)          |
| 5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업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선기수요여어이 드로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저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 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 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 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 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 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 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조 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 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u>건설기술용역</u>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 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1 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

| 세26조(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u> 의 |
|---------------------------|
| 등록 등) ①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
|                           |
|                           |
|                           |
|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
|                           |
|                           |
|                           |
|                           |
|                           |
| _                         |
| ·<br>②건설기술엔지              |
| 니어링사업자                    |
|                           |
|                           |
| ③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 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④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 술용역사업자가 등록 또는 변 경등록을 하거나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u>건설기</u> <u>술용역업</u>의 전문분야 구분, 전 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 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                         |
| 5                       |
| <u>건설기</u>              |
| <u>술엔지니어링사업자</u> 건설기술   |
|                         |
| <u>엔지니어링사업자</u>         |
|                         |
|                         |
| ·<br>⑥건설기               |
| 술엔지니어링업                 |
| <u> = ш   т   1 0 п</u> |
|                         |
|                         |

- ⑦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수 없다.
  - 1. 2. (생략)
  -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생략)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지의무)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는 타인 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 ⑦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
|--------------------------------|
|                                |
|                                |
| 제27조(결격사유)                     |
|                                |
|                                |
|                                |
| 1.·2. (현행과 같음)<br>3            |
| J.                             |
|                                |
| <u>.</u>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
| <br>4. (현행과 같음)                |
| 제28조(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u>       |
| <u>자</u> 등의 의무) ① <u>건설기술엔</u> |
| 지니어링사업자전설기술                    |
| <u>엔지니어링</u>                   |
|                                |
|                                |
| ②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사용하여 <u>건설기술용역</u>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 는 아니 된다.

제29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영 건업 양도 등) ①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가 영업 을 양도하려는 경우
- 2. 법인인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 ②·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그 영 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건설기술엔지                 |
|------------------------|
| 니어링                    |
|                        |
|                        |
| 제29조(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
| 자의 영업 양도 등) ① 건설기      |
| <del></del>            |
| <u>술엔지니어링사업자</u>       |
|                        |
|                        |
|                        |
|                        |
| <u>.</u>               |
|                        |
| 1.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2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
| <u>사업자</u>             |
| ②·③ (현행과 같음)           |
| 4                      |
|                        |
|                        |
|                        |
|                        |
|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
|                        |
|                        |
| 1.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u> |
|                        |
|                        |
|                        |

- 2. 법인인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 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 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⑤ 제4항에 따라 종전의 <u>건설</u> <u>기술용역업</u>의 등록에 관한 권 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u>건설기술용역</u> 실적을 승계한다.
-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 기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의 현황
  - 2. 발주청이 발주하는 <u>건설기술</u>용역 실적
  - 3. 발주자가 발주하는 <u>건설기술</u><u>용역</u>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용역의 실적
  -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u>건</u> 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 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

| 2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 <u>사업자</u>                 |
|                            |
|                            |
| ⑤ <u>건설</u>                |
| 기술엔지니어링업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
| 제30조(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의 실 |
| 적 관리) ①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
|                            |
|                            |
| <u>.</u>                   |
| 1.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2 <u>건설기술</u>              |
| <u>엔지니어링</u>               |
| 3 <u>건설기술</u>              |
| <u>엔지니어링</u>               |
| 건                          |
| _                          |
| <u> </u>                   |
| 설기술엔지니어링                   |
| 선실기                        |

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 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u>건설기술용역사</u> 업자의 현황과 <u>건설기술용역</u>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통보·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 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 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u>술엔지니어링</u>    |   |
|------------------|---|
|                  |   |
|                  |   |
|                  |   |
| ③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       |   |
| 업자               |   |
| 건설기              | _ |
| 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 <del></del> .    |   |
| 4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                  |   |
|                  |   |
| <u>.</u>         |   |
| 제31조(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   |
| 자의 등록취소 등) ①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생략)
- 3. 영업정지기간에 <u>건설기술용</u>
   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만, 제33조에 따라 <u>건설기술</u>
   용역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 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 호를 사용하여 <u>건설기술용역</u> 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 려 준 경우
- 6. (생략)
- 7.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

| 1. | •2. (현행과 같음)   |
|----|----------------|
| 3. | 건설기술엔          |
| -  | 지니어링           |
|    | <u>건설</u>      |
| 2  | 기술엔지니어링        |
|    |                |
| 4.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u>건설기술엔지니</u> |
| _  | <u>어링</u>      |
|    |                |
|    | (현행과 같음)       |
| 7.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8. 9. (생략)
- ② 시·도지사는 <u>건설기술용역</u>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u>건</u> 설기술용역사업자</u>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바. 다른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사. (생략)

- 6. (생략)
-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

| 8. · 9. (현행과 같음) ②건설기술엔지                                 |
|--|
| <u>니어링사업자</u>  |
| <br>1. ~ 4. (현행과 같음)                                     |
| 5건         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br>가. ~ 마. (현행과 같음)<br>바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br><u>사업자</u>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br><u>사업자</u>                                  |
| 가. ~ 라. (현행과 같음)<br>마                                    |
| 건설기술엔지   |

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니어링사업자-----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바.・사. (생 략)바.・사. (현행과 같음)

③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는 제1 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 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u>건설기</u> <u>술용역</u>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을 수주(受注)할

수 없다.

- ④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1 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제1항·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 ⑤ (생 략) 1227/도로키 x 키보 도 9

|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 | 등을 받 | 은 |
|---------------|------|---|
|---------------|------|---|

| 바.・사. (현행과 같음)                   |
|----------------------------------|
| ③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건                                |
| <del></del>                      |
| 설기술엔지니어링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
| 4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                                  |
| <u>.</u>                         |
| 5 (현행과 같음)                       |
|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
| 게 50 보 ( 6 ㅋ 커 그 거 년 - 6 ㄹ - 단 년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전에 체결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 제1 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기술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 제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
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
는 과실로 <u>해당 건설기술용역</u>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u> 의    |
|--------------------------|
| 업무 계속) ①                 |
|                          |
| <u>건</u>                 |
| 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u>건설</u>                |
| 기술엔지니어링계약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
| ②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
| ]34조(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u> |
| <u>자</u> 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 ①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
| 해당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 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④ • ⑤ (생 략)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u>건설</u>
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
설기술용역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br>②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                        |
| ③                        |
| 건설기술엔지니                  |
| <u> 어링사업자</u>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u>건설</u> |
| 기술엔지니어링사업) ①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맡겨시행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전설기술용역사업자(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있다.
- 1. ~ 3. (생략)
- ④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2 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 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게 하도급할 수 있다.
- ⑤ (생략)

제37조(<u>건설기술용역</u> 대가) ① 발 제 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

| ②   |
|---|
|   |
|   |
| <u>건</u>  |
| 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3   |
| <u>건</u>  |
| 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  |
| 업자  |
| <u>건설기술</u>   |
| 엔지니어링사업자  |
| 1 . 2 (청체기 가 0)   |
| <ol> <li>1. ~ 3. (현행과 같음)</li> <li>④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li> </ol> |
| (4) <u>신설기절 엔지디의 영지(급자</u>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u>'C E/  E E       0</u>                                     |
| 건설기술  |
| 엔지니어링사업자  |
|   |
| ·<br>⑤ (현행과 같음)   |
| 37조(건설기술엔지니어링 대가)   |
| ①건설기술엔지니어   |

술용역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 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 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 지 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 역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 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사 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링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u>건설기술엔</u>            |
|   | 지니어링비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비              |
|   |                         |
|   | ②                       |
|   | 건설엔지니어링용역비              |
|   |                         |
|   |                         |
|   |                         |
|   |                         |
| 제 | 38조(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u> |
|   | <u>자</u> 의 지도·감독 등) ①   |
|   | <u>건</u>                |
|   | 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u>.</u>                |
|   | ②                       |
|   |                         |
|   |                         |
|   | 건설기술엔지니                 |
|   | 어링사업자                   |
|   |                         |
|   |                         |
|   | •                       |

| (3) | • 4      | (생  | 략) |
|-----|----------|-----|----|
| (U) | <u> </u> | \ 0 | 1/ |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조

-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한다.
-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u>건설</u> 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 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
|--|
|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 ①  |
|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
| <u>자</u>                                       |
|  |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                                       |
| 링사업자   |
|  |
|  |
|  |
|  |
|  |
|  |
| (3)  |
| ·<br>건설  |
| 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u>-18                                    </u> |
|  |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 1. ~ 5. (생략)
-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

| <b>4</b>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       |
| <u>업자</u>        |
|                  |
|                  |
|                  |
|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⑤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
| 6                |
| 건설기술엔지니어         |
| 링사업자             |
| <u>건설기</u>       |
| 술엔지니어링사업자        |

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⑦ (생략)

-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 등) ① ~ ④ (생 략)
  - ⑤ 발주청은 <u>건설기술용역사업</u> <u>자</u>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 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 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 ⑥ • ⑦ (생 략)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 보고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사 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
| ⑦ (현행과 같음)         |
|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  |
| 관리계획 등) ① ~ ④ (현행과 |
| 같음)                |
| ⑤건설기술엔지니어          |
| <u>링사업자</u>        |
|                    |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
|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 |
| 보고 등) ①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                    |
| <u>.</u>           |

- ②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가 실정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 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은 <u>건설기술용역사업</u> <u>자</u>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 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 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소속 건 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 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 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 임할 수 있다.
- ⑤ (생 략)

법률 제174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① 발 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 ②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br>③건설기술엔지니어                    |
| 링사업자                              |
|                                   |
|                                   |
|                                   |
| ④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u>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
| 법률 제17441호 건설기술 진흥법               |
| 일부개정법률<br>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
| 재59소의4(건절사업단디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① |
| 대한 구청산십 배제 중/ ①                   |
|                                   |
|                                   |
|                                   |
|                                   |
|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 보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 ⑤ (생 략)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 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 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 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 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 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 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 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 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 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 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 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u>건설기술용역</u> 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 |
| 지 명령 등) ①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건설기술엔지           |
| <u>니어링사업자</u>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 설사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 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재시공·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소속 건 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 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

| ③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
|                  |
| 4                |
|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u>사업자</u>       |
|                  |
|                  |
|                  |
|                  |
|                  |
| ⑤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⑥ (생략)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사업 작·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아니된다.

제40조의3(면책)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⑥ (현행과 같음)                 |
|----------------------------|
|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u>사업자</u>                 |
|                            |
|                            |
|                            |
|                            |
|                            |
| 제40조의3(면책)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u>선 글기글 센계 의 학 67개 법계</u> |
|                            |
|                            |
|                            |
|                            |

|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①     |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① |
|-------------------------|---------------------|
|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         |                     |
| 공사에 딸리는 전기·소방 등의        |                     |
| 설비공사(이하"설비공사"라 한        |                     |
| 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                     |
|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 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        |                     |
| 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                     |
| 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         |                     |
| 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그 건        |                     |
| 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         |                     |
| 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        |                     |
| 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        |                     |
| 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                     |
| 있다.                     |                     |
|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1.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        | ②                   |
| 사 용역을 수행한 <u>건설기술용</u>  | 건설기술엔               |
| <u>역사업자</u> 는 수요예측 자료 등 | <u>지니어링사업자</u>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

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 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 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수 있다.
- ⑥ (생략)
-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조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 ③ (현행과 같음)           |
|----------------------|
| <b>4</b>             |
|                      |
|                      |
|                      |
| <u>건</u>             |
| 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5                    |
|                      |
| 건설기                  |
| 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
| 세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 |
| 건설기                  |
| 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
| <u> </u>             |
|                      |
| ②                    |

제출받은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 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 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 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시 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하여야 한다.

### ④ (생략)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 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 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 ⑥ (생략)

제50조(<u>건설기술용역</u> 및 시공 평 저 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                 |
|----------------------------|
| <u>업자</u>                  |
|                            |
|                            |
|                            |
|                            |
| ③                          |
|                            |
|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u>        |
|                            |
|                            |
| ④ (현행과 같음)                 |
| ⑤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
| ll 50조(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및 |
| 시공 평가 등) ①                 |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면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    |
|---------------|
| <u>업</u>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4             |
| <u>건</u>      |
| 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고 서 기         |
| <u>건설기</u>    |
| <u>술엔지니어링</u> |
|               |
|               |
| (5)           |
| ullet         |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 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종합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우수건</u> 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 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발주청은 <u>건설기술용역사업</u>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 1항에 따른 <u>우수건설기술용역</u> 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br>                             |
|--------------------|--|
| 6                  | <br><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 우수건설기술엔지니어링<br>등의 선정) ①                    |
| <br><u>우수건</u><br> | 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br>                           |
| <u>링사업</u><br>     | <br>건설기술엔지니어<br><br><u>우수건설기</u><br>니어링사업자 |
| 3                  | <br>                                       |

따른 <u>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u>,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 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1항에 따른 <u>우수건설기술</u> 용역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 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 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 기술인이 각각의 업무와 관 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 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 은 경우

# 4.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우수건설기</u> <u>술용역사업자</u>,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 <u>우수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u> |
|---------------------|
| <u>업자</u>           |
|                     |
|                     |
|                     |
| <u>.</u>            |
| 1. • 2. (현행과 같음)    |
| 3 <u>우수건설기술</u>     |
| <u>엔지니어링사업자</u>     |
|                     |
|                     |
|                     |
|                     |
|                     |
|                     |
| 4. (현행과 같음)         |
| <b>4</b>            |
| <u>우수건설기술</u>       |
| 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 ①                   |
|                     |

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 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 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 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 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 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 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 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 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 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 1. 2. (생략)
- 3.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 4. (생략)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

| 건설기                    |
|------------------------|
| 술엔지니어링                 |
|                        |
|                        |
|                        |
|                        |
|                        |
|                        |
|                        |
|                        |
|                        |
|                        |
|                        |
| 1 0 (원웨기 기수)           |
| 1.•2. (현행과 같음)         |
| 3. <u>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u> |
|                        |
|                        |
| 4 (처레리 가 O)            |
| 4. (현행과 같음)            |
| ②                      |

점을 받은 자에게 <u>건설기술용</u> 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③ • ④ (생 략)

-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지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 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 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

| 건설기술엔                       |
|-----------------------------|
| 지니어링                        |
|                             |
|                             |
| <u>.</u>                    |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
|                             |
|                             |
|                             |
| -1.1.1.4.01.1.1.1           |
| 건설기술엔지니어                    |
| <u>링사업자</u>                 |
|                             |
|                             |
|                             |
| 2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u>'C 근기 근 면기 다 다 이기 日기</u>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4                           |
| 건설기술엔지니어                    |
| <u>링사업자</u>                 |
|                             |

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5) (생략)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가 제26조제1항 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 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 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 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 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 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① (생 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 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 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

| -,                              |
|---------------------------------|
| ·<br>                           |
|                                 |
| (전 세체 및 기· O )                  |
| ⑤ (현행과 같음)<br>게(17(포기기시시 레케세 레퀴 |
|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
| 평가기관) ①                         |
| <u>건설</u>                       |
| 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 ~ ① (현행과 같음)                    |
| (3)                             |
|                                 |
|                                 |
|                                 |
|                                 |

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 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3. (생략)
- ④ ~ ⑱ (생 략)

제6장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 등의 단체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 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 술인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사 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 체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 (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 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생 략)

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회에 대하여 <u>건설기술용</u>

| <u></u>          |
|------------------|
| 1. (현행과 같음)      |
| 2.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3. (현행과 같음)      |
| ⑭ ∼ ⑱ (현행과 같음)   |
| 제6장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
| 제1절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등의 단체            |
|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       |
| 업자               |
|                  |
| 건설기              |
| 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2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      |
| <u> 자단체</u>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제71조(보고 등)       |
| 건설기술엔            |

역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 다.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
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
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
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제87조(벌칙)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는 5년 이하의 물 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

| <u>지니어링</u>          |
|----------------------|
|                      |
|                      |
|                      |
|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 |
|                      |
|                      |
|                      |
|                      |
|                      |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87조(벌칙) ①           |
|                      |
|                      |
| 건설                   |
| 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br>②               |
|                      |
|                      |
|                      |

주청에 손해를 끼친 <u>건설기술</u> 용역사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0조제1항에 따른 <u>건설기</u> <u>술용역사업자</u> 또는 공사감독 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생략)

-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건설기술용역</u> 업무를 수행한 자
  -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 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

| 건설기술        |
|-------------|
| 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제87조의2(벌칙)  |
|             |
|             |
|             |
| 1건설기        |
| 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             |
|             |
| 2. (현행과 같음) |
| 제88조(벌칙)    |
| 게00고(현기)    |
|             |
|             |
|             |
| 1           |
| 건설기술엔지      |
| <u>니어링</u>  |
| 1의2         |
|             |
|             |
|             |
|             |
|             |

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 출한 <u>건설기술용역사업자</u> 1의3. (생 략)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 바. (생 략)

- 2. (생략)
-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 토를 하지 아니한 <u>건설기술</u> 용역사업자

4. ~ 10. (생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 1의3. (현행과 같음)     |
| 1의4               |
| 1 4.              |
|                   |
|                   |
|                   |
|                   |
|                   |
| 건                 |
| 느<br>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 <u> </u>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
| 2. (현행과 같음)       |
| 3                 |
| 건설기술엔             |
| 지니어링사업자           |
| 4. ~ 10. (현행과 같음) |
| 89조(벌칙)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3                 |
|                   |
|                   |
| 가                 |

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u>건설</u> 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생 략)

4. ~ 6. (생 략)

제91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 (생 략)
- 8.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 지기간에 <u>건설기술용역</u>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                    |
|                    |
|                    |
| 나                  |
| 건설                 |
| <u>기술엔지니어링</u>     |
|                    |
|                    |
| 다. (현행과 같음)        |
| 4. ~ 6. (현행과 같음)   |
| 제9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
| 같음)                |
| ③                  |
|                    |
|                    |
| 1. ~ 7. (현행과 같음)   |
| 8                  |
|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                    |
| <u>건설기술엔지니어링</u>   |
|                    |
| -                  |
| Q                  |

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자

-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u>건설기</u> 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1. ~ 16. (생 략)
- ④ (생 략)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
|                    |
| 10                 |
|                    |
| 건설기술               |
| <u>엔지니어링</u>       |
|                    |
| 11. ~ 16. (현행과 같음) |
| ④ (현행과 같음)         |